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22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추

가하여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제7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입법예산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담당(전화:055-225-5373,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dejavu4934@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8

발의연월일 : 2022. 4. 8.

발 의 자 : 심영석·공창섭·김상찬·김상현·김장하·김태웅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백승규·이천수·이해련 전병호·전홍표·진상락 의원(1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3조(기능) ----------.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창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4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